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52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양부남·박정현·이해식 김영환·이광희·안도걸 조인철·정진욱·채현일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는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 체계는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계정 내 세입·세출 기준이 부재함으로 실제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적용대상을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정비하고, 인건비계정 내 세입·세출 근거 조문 등을 현행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실비”를 “실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 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등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나.「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제2조(정의)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가. ---------- 실제 비용 ---------- 나. ----------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 (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 소방공무원등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② ---------- 소방공무원등 ----------.
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 소방공무원등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